

하나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일반형4 약관

(시행일자 2017.8.1)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회원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회원간에 체결된 하나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하 "상품"이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품가입자(보장대상자):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중 이 상품의 가입에 동의한 본인 회원
2. 보장기간: 상품을 가입한 날의 다음날 00:00 시부터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되거나 상품이 해지된 날의 24:00 까지의 기간
3. 보장사고: 이 약관 부칙(보장사고 별 보장 제공 기준 등)에서 정한 사고
4. 상품수수료 산정 기준일: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작성 기준일
5.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 (이하 "카드채무액"이라 합니다.) : 상품가입자의 개인카드로 이용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및 해당 수수료, 이자, 연체료 등을 포함하여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총 채무금액을 말하며, 이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된 해당월 청구금액과 미청구 잔액(해당월에 청구되지 않았지만, 추후 청구될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 연회비 및 부정매출, 금융분쟁의 사유로 회사가 청구 중지한 금액 및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보장채무액: 보장사고 발생일 직전 청구시점의 청구금액 및 미도래 청구잔액과 이후 보장사고 발생전일까지의 이용금액의 합
7. 결제금액: 제 5 호의 카드채무액 중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명기된 해당월 청구금액

8. 의사: 의료법 제 3 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한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제 3 조(상품의 성격)

- ① 이 상품은 상품가입자가 매월 회사가 정하는 상품수수료를 납부하고, 상품가입자에게 보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장채무액을 면제하거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하는 유료 금융상품입니다.
- ② 이 상품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 ③ 이 상품의 가입 및 해지는 상품가입자의 선택사항이며, 상품가입자는 이 상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카드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 2 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4 조(상품의 신청, 개시, 종료)

- ① 회사의 카드회원은 본인에 의한 가입신청서 작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의사 표명,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상품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효력은 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 시부터 개시(상품 개시일)됩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1. 상품가입자가 가입증서에 표시된 보장연령 만 61세를 초과한 때, 이경우 회사는 보장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상품가입자가 부칙에 의거 사망, 치명적장애 보장 사고가 발생하여 채무면제를 받거나 상품가입자가 보장한도액을 소진하여 보상받은 때, 이 경우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채무면제 또는 보상신청을 접수한 때에 상품계약종료를 상품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제 5 조(상품가입의 철회)

- ① 상품가입자는 이 상품의 가입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는 가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 ③ 상품가입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보장사고 부분에 한하여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6 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상품가입 신청 시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상품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상품가입자에게 약관,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상품명, 상품성격, 상품수수료, 보장내용, 채무면제·유예 신청방법 및 제 12 조의 가입 전 알릴 의무 등 상품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이에 대한 상품가입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약관,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가입자는 가입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3 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제 7 조(상품 가입의 무효)

상품가입자가 상품가입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품 가입을 무효로 하며,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 1. 나이가 만 20 세 미만 또는 만 71 세 이상인 경우
- 2.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

제 8 조(상품수수료)

- ① 상품가입자는 상품수수료를 매월 결제하셔야 합니다.
- ② 상품수수료는 상품가입자의 매월 상품수수료 산정기준일의 카드채무액에 회사가 정하는 일정율(이하 "상품수수료율"이라 합니다)을 곱하여 매월 청구됩니다.
- ③ 상품가입자는 매월 청구된 상품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승인 후 도래하는 첫번째 결제일에 결제하셔야 합니다.

- ④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상태, 회사의 시스템 문제 등으로 회사가 해당월에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월 상품수수료와 합산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입자가 납부한 상품수수료는 이 상품상의 보장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 5 조 내지 제 7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가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상품기간 중에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예정일 6 개월 전까지 상품가입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⑥ 상품수수료율 변경 예정 사실을 통보 받은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까지 계약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상품수수료율 변경 예정 통보 시 변경일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⑦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회사는 상품수수료율의 변경사실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 9 조(상품계약의 해지)

- ① 이 상품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보장사고에 대해서는 이 약관상의 보장이 제공되지 아니 합니다.
- ② 상품가입자는 보상기간 중에 언제든지 상품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품가입자가 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 계약을 해지합니다.
 1.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시정 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해지 1 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상품가입자 또는 그 상속인이 고의로 보장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상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상품가입자(그 상속인 포함)가 보장 청구를 위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상의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상품가입자가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연속 상품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까지 상품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회사의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나. 타 신용카드 연체 및 대외 금융기관 불량 회원으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 카드의 분실, 전대환 대출, 법적조치, 현금매출(카드깡), 제3자의 요청 거래중지, 카드 사용한도가 없는 경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라. 기타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단, 카드미사용으로 채무액이 없어 회사에서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3 장 보장의 내용

제 10 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 ① 회사는 상품가입자에게 상품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2 항 내지 제 5 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다만 제 2 항 제 2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 또는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 ② 회사는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채무면제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환급합니다
 1. 상품가입자의 보장사고 별 보장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리며 회사는 면제된 채무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채무액 면제 시는 상품가입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으로 면제됩니다.
 2. 상품가입자가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채무액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는 동 금액을 다른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 총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상품가입자(사망 시 상속인 포함)에게 환급합니다.
 3. 보장사고 별 채무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보장사고 별 보장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채무유예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채무를 유예합니다.

1. 상품가입자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상환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해당 결제금액을 결제하지 않으셔도 연체로 처리되지 아니 합니다.
 2. 상품가입자는 제 1 호의 상환유예기간 동안 결제하지 않은 결제금액을 상환유예보장이 종료된 이후 도래하는 첫 결제일에 전액 결제하셔야 합니다.
 3. 상품가입자는 제 1 호의 채무유예 보장을 제공받는 동안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은 이러한 보장이 종료된 이후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전액 결제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4. 채무유예 보장이 제공되는 동안에는 유예된 채무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 등은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예된 채무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포인트 등이 제공됩니다.
 5. 보장사고 별 채무유예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보장사고 별 보장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④ 이 상품의 보장한도액(채무면제된 금액 또는 채무유예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말함)은 상품가입자당 3 천만 원을 최대 한도로 하고 있으며, 보장사고 별 한도액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⑤ 보장청구 가능기간은 보장사고의 발생일로부터 5 년입니다.

제 11 조(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10 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1. 상품가입자의 고의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입원. 단, 자살의 경우에는 부칙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테러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4. 위 3 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5. 상품가입자가 고의로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6. 상기 외에 부칙에 별도로 정한 사유

제 4 장 가입 전 알릴 의무 등

제 12 조(상품 가입 전 알릴 의무)

상품가입자가 상품 가입을 신청 시 회사가 질문하는 병력 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상품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2 조(상품 가입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사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을 개시하고 보장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이 지났을 때
- ③ 제 1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장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제 12 조(상품 가입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장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0 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 5 장 보 칙

제 14 조(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용예정일로부터 1 개월 전까지 상품가입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는 약관 변경 예정통보 시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시정 명령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고지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상품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상품가입자가 가입한 이 상품의 세부 내용
 - 3. 상품가입자의 채무액 등 신용카드관련 정보
 - 4. 상품가입자의 상해, 질병에 관한 정보

제 16 조(회사가 제작한 안내장의 효력)

회사가 이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한 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상품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회사는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8 조(분쟁의 조정)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관할법원)

이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상품가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보장사건별 보장 제공 기준 등

제10조에 따른 보장 내용 및 제11조에 따른 보장 제외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항에 따릅니다. 또한, 부칙의 모든 보장사건은 상품 가입 이전 진단받은 장애,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진단받은 질병 및 상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장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사망

가. 보장 제공 기준

① 가입기간 중 상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② 상품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이 상품은 종료됩니다.

나. 이 보장사건 발생일은 사망일이며 채무액 산정일은 사망 직전일로 합니다.

다. 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으로 합니다.

라. 보장 제외 사항: 회사는 상품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을 따릅니다.

바. 상속인의 보장 청구이전에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사망을 인지한 경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채무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치명적 장애

가. 보장 제공 기준

① 가입기간 중에 상품가입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1~3급의 장애인이 된 경우 상품 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② 이 약관상 "치명적 장애"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보장기간 중 보장대상자에게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명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3천만 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 ④ 이 약관상 “치명적 장애”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이 상품은 종료됩니다.
- 나. 이 보장사건 발생일은 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이며, 채무액 산정일은 상해의 경우 사고 직전일,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 직전일로 합니다.
-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 라. 보장 제외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총칙에서 보상 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②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상품 가입 이전 진단받은 장애가 원인이 된 장애
 - ④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단 및 치료 받은 질병 및 상해가 원인이 된 치명적 장애
 - ⑤ 가입 당일 입원중인 경우
 - ⑥ 상해 및 질병으로 상품 가입 이전 180일 이내, 합산하여 31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⑦ 기타 이 상품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3. 치명적 질병 및 주요 장기 이식 수술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상품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 이식수술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받은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단, 암의 경우는 상품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 ② 위 ①항의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표상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암(상피내암 및 기타피부암 포함), 말기간경화,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별표1]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보장기간 중 보장대상자가 “치명적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5백만 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단, 암의 경우는 상품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치명적 질병 진단의 경우는 최초 진단일로하며, 주요장기 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 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또는 최초 질병진단일로 합니다. 채무액 산정일은 치명적 질병 진단의 경우는 최초 진단 직전일로하며, 주요 장기 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 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 직전일 또는 최초 질병진단 직전일로 합니다.

다. 위 나.의 “치명적 질병 진단”의 최초 진단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뇌혈관질환’의 경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한 보고일.
- ② ‘허혈성심질환’의 경우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한 보고일.
- ③ ‘만성신장질환’의 경우 각종 검사 등을 기초로 한 보고일.
- ④ 암(상피내암 및 기타피부암 포함)의 경우 전산화단층촬영(bra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양전자방출단층술(PET)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되거나,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세침흡인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확정된 최초 검사 보고일.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확정된 날.
- ⑤ ‘말기간경화’의 경우 신체검사 및 혈액을 통한 간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등을 기초로 한 보고일.
- ⑥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의 경우 병력과 함께 말초혈액검사, 골수검사, 염색체검사 등을 기초로 한 보고일.

라.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마. 보장 제외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총칙에서 보상 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②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 ③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및 치료 받은 질병 및 상해가 원인이 된 치명적 질병
- ④ 가입 당일 입원중인 경우
- ⑤ 상해 및 질병으로 상품 가입 이전 180일 이내, 합산하여 31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⑥ 기타 이 상품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4. 장기요양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이 약관상 “장기요양”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등급판정절차를 거쳐서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보장대상자가 가입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5백만 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 ③ 이 약관상 “장기요양”으로 보상을 받은 이후,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재판정을 받은 경우
- ④ 해당 서비스를 다시 보장하여 드립니다.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시작일이며 채무액 산정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시작직전일로 합니다.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라. 보장 제외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총칙에서 보상 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② 상품 개시 후 90일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 ③ 최초 해당 서비스로 보상을 받은 이후, 동일한 등급으로 갱신 또는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재판정 받은 경우
- ④ 상품 개시일 이전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 ⑤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 ⑥ 가입 당일 입원중인 경우
- ⑦ 상해 및 질병으로 상품 가입 이전 180일 이내, 합산하여 31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⑧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5. 자동차사고 8주 진단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이 약관상 “자동차사고 진단”라 함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 및 정신질환은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어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서 8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상 “자동차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운전”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회원이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ㄷ.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 ③ ①항 내지 ②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④ 가입기간 중 보장대상자에게 "자동차사고 8주 진단"이 발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5백만 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사고발생일이며 채무액 산정일은 사고 발생직전일로 합니다.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라. 보장 제외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총칙에서 보상 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② 상품가입자의 자해, 상품가입자 및 가족(상속인 포함)의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③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 치료받은 질병 및 상해가 원인이 된 진단
- ④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 ⑤ 가입 당일 입원중인 경우
- ⑥ 상해 및 질병으로 상품 가입 이전 180일 이내, 합산하여 31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⑦ 6종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⑧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⑨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6. 장기입원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이 약관상 "장기입원"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내 61일 이상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② 가입기간 중 보장대상자에게 “장기입원”이 발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5백만 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 ③ 이 약관상 장기입원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180일간의 보장제외기간이 발생합니다. 보장제외기간의 개시는 최초입원일로부터 62일째 되는 날로 합니다. 또한, 보장제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제외기간 종료 후 1일째 되는 날을 새로운 “장기입원”의 입원 개시일로 간주합니다.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장기입원 보장기간 내 최초 입원 개시일이며 채무액 산정일은 최초 입원 개시 직전일로 합니다.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라. 보장 제외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총칙에서 보상 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②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③ 위생관리나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사유로 입원
- ④ 상해나 질병이 원인이 아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⑤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 ⑥ 가입 당일 입원중인 경우
- ⑦ 상해 및 질병으로 상품 가입 이전 180일 이내, 합산하여 31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⑧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별표 1] 치명적 질병 진단

| 구 분 | 정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p>뇌혈관 질환</p> | <p>“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71 472 1366 1043"> <thead> <tr> <th data-bbox="371 472 1206 533">대상이 되는 질병</th> <th data-bbox="1206 472 1366 533">분류번호</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1 533 1206 584">1. 지주막하출혈</td> <td data-bbox="1206 533 1366 584">I60</td> </tr> <tr> <td data-bbox="371 584 1206 636">2. 뇌내출혈</td> <td data-bbox="1206 584 1366 636">I61</td> </tr> <tr> <td data-bbox="371 636 1206 687">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td> <td data-bbox="1206 636 1366 687">I62</td> </tr> <tr> <td data-bbox="371 687 1206 739">4. 뇌경색증</td> <td data-bbox="1206 687 1366 739">I63</td> </tr> <tr> <td data-bbox="371 739 1206 790">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td> <td data-bbox="1206 739 1366 790">I64</td> </tr> <tr> <td data-bbox="371 790 1206 842">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td> <td data-bbox="1206 790 1366 842">I65</td> </tr> <tr> <td data-bbox="371 842 1206 893">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td> <td data-bbox="1206 842 1366 893">I66</td> </tr> <tr> <td data-bbox="371 893 1206 945">8. 기타 뇌혈관 질환</td> <td data-bbox="1206 893 1366 945">I67</td> </tr> <tr> <td data-bbox="371 945 1206 996">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td> <td data-bbox="1206 945 1366 996">I68</td> </tr> <tr> <td data-bbox="371 996 1206 1043">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td> <td data-bbox="1206 996 1366 1043">I69</td> </tr> </tbody> </table> <p>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p>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지주막하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4. 뇌경색증 | I63 |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8.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주막하출혈 | I60 | | | | | | | | | | | | | | | | | | | | | | |
| 2. 뇌내출혈 | I61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 | | | | | | | | | | | | | | | | | | | |
| 4. 뇌경색증 | I63 | | | | | | | | | | | | | | | | | | | | | | |
|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 | | | | | | | | | | | | | | | | | | | |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 | | | | | | | | | | | | | | | | | | | |
|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 | | | | | | | | | | | | | | | | | | | |
| 8.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 | | | | | | | | | | | | | | | | | | | |
|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 | | | | | | | | | | | | | | | | | | | |
|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 | | | | | | | | | | | | | | | | | | | |
| <p>허혈성 심장질환</p> | <p>“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39 1301 1398 1671"> <thead> <tr> <th data-bbox="339 1301 1214 1361">대상이 되는 질병</th> <th data-bbox="1214 1301 1398 1361">분류번호</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9 1361 1214 1413">1. 협심증</td> <td data-bbox="1214 1361 1398 1413">I20</td> </tr> <tr> <td data-bbox="339 1413 1214 1464">2. 급성 심근경색증</td> <td data-bbox="1214 1413 1398 1464">I21</td> </tr> <tr> <td data-bbox="339 1464 1214 1516">3. 이차성 심근경색증</td> <td data-bbox="1214 1464 1398 1516">I22</td> </tr> <tr> <td data-bbox="339 1516 1214 1568">4.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td> <td data-bbox="1214 1516 1398 1568">I23</td> </tr> <tr> <td data-bbox="339 1568 1214 1619">5.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td> <td data-bbox="1214 1568 1398 1619">I24</td> </tr> <tr> <td data-bbox="339 1619 1214 1671">6. 만성 허혈성 심장병</td> <td data-bbox="1214 1619 1398 1671">I25</td> </tr> </tbody> </table> <p>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p>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협심증 | I20 | 2.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3. 이차성 심근경색증 | I22 | 4.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5.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 I24 | 6. 만성 허혈성 심장병 | I25 | | | | | | | |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1. 협심증 | I20 | | | | | | | | | | | | | | | | | | | | | | |
| 2.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 | | | | | | | | | | | | | | | | | | | | |
| 3. 이차성 심근경색증 | I22 | | | | | | | | | | | | | | | | | | | | | | |
| 4.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 I24 | | | | | | | | | | | | | | | | | | | | | | |
| 6. 만성 허혈성 심장병 | I25 | | | | | | | | | | | | | | | | | | | | | | |
| <p>주요 장기이식수술</p> | <p>“주요 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기증자로부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또는 골수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기증받아 수혜자에게 이식한 수술을 말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만성 신장질 환 | “만성 신장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N18”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 | | | | | | | | | |
|------------------------|---|--|-----------|------|-----------------------|----------|----------------|----------|------------------------|----------|--------------------|----------|-----------------------|----------|
| 말기간 경화 | <p>“말기간경화”라 함은 아래의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되어야 하며, 진단확정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 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등을 기초로 확정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2. 영구적인 황달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4. 간성 뇌증 <p>단,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됨.</p> | | | | | | | | | | | | | |
| 중대한 재생불 량성빈 혈 | <p>“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하며,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서 호중구 수가 500/mm³미만 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 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중구 수가 500/mm³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mm³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³미만 <p>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됨.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등의 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함.</p> | | | | | | | | | | | | | |
| 암 | <p>【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36 1700 1401 2027"> <thead> <tr> <th data-bbox="336 1700 1193 1771">대상이 되는 질병</th> <th data-bbox="1193 1700 1401 1771">분류번호</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6 1771 1193 1827">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td> <td data-bbox="1193 1771 1401 1827">C00 ~C14</td> </tr> <tr> <td data-bbox="336 1827 1193 1883">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td> <td data-bbox="1193 1827 1401 1883">C15 ~C26</td> </tr> <tr> <td data-bbox="336 1883 1193 1939">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td> <td data-bbox="1193 1883 1401 1939">C30 ~C39</td> </tr> <tr> <td data-bbox="336 1939 1193 1995">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td> <td data-bbox="1193 1939 1401 1995">C40 ~C41</td> </tr> <tr> <td data-bbox="336 1995 1193 2027">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td> <td data-bbox="1193 1995 1401 2027">C43 ~C44</td> </tr> </tbody> </table>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 ~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 ~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0 ~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 ~C41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3 ~C44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 | | | | | | | | | |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 ~C14 | | | | | | | | | | | | | |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 ~C26 | | | | | | | | | | | | | |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0 ~C39 | | | | | | | | | | | | | |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 ~C41 | | | | | | | | | | | | | |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3 ~C44 | | | | | | | | | | | | | |

| | |
|---------------------------------|----------|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 ~C49 |
|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 ~C58 |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 ~C63 |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 ~C68 |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C69 ~C72 |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C73 ~C75 |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 C76 ~C80 |
|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 ~C96 |
|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 C97 |
|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 D46 |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 D47.3 |
| 20. 골수섬유증 | D47.4 |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제 6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 3. 중이 및 호흡기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 4. 제자리흑색종 | D03 |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제 6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 2. 종이, 호흡기, 흉곽 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 D47.0 |
| 10. 미결정의 단클론성감마병증 | D47.2 |
|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7.7 |
|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 불명의 신생물 | D47.9 |
|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2]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1.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2.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
 - 가. 보상청구서(회사양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나. 사고 입증 서류

| | |
|------------------|--|
| 사망 | -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포함) |
| 치명적 장애 |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 |
| 치명적 질병 및 장기이식 수술 | - 과거병력확인서(또는 과거 병력확인을 회사에 위임할 경우 인감증명서) - 질병진단 입증서류 (특정질병진단서, 최초검사 결과지 포함) - 장기 이식수술 입증 서류(수술확인서 포함) |
| 장기입원 | - 입/퇴원확인서 |
| 장기요양 | - 장기요양인정서 |
| 자동차사고 8주 진단 |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

다. 기타 보상 실행을 위해 필요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홈페이지에 게시).

3.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2항 나호의 구비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료, 서비스의 해지 및 신용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있습니다.